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정사유

- 가.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
- 나. 종전 시·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·구(군) 모두 구성토록 2008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2. 관련법령

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

3. 주요골자

- 가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(안 제2조)
- 나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- 다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임기 등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의 제정 건은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
- 종전 시·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·구(군) 모두 구성토록 2008년 1월 1일자로 법률이 개정 시행 되었고, 지난 9월초 국토해양부와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한 바 있어
- 금번 조례 제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되나, 본 제정조례 제3조(구성) 제2항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므로

위 조례 제정 건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2008. 10. 28

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여 기 선

《 관 계 법 령 》

교통안전법

제13조 ①지역별 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(이하 “지역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교통안전법 시행령

제8조 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례에서 “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례에서 “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

②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(이하 “지역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